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598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18조제1호의2 및 제18 조의2제1호·제2호 신설)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승수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4. 24.
3. 회 부 일 : 2026. 4.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예술 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설치 및 개보수, 운전자금(제작 및 기획)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의 융자 자금을 공급하고 있음.

하지만 「문화예술진흥법」상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의 관광산업 융자,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경우 각 사업별로 해당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데 반해,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자금에 대하여 회계처리의 구분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산업의 초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생력을 갖춘 예술 경영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호의2 신설 등).

III. 검토의견

1.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안 제18조제1호의2 및 제18조의2제1호·제2호 신설)

개정안은 예술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자금의 용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자금에 대하여 회계처리 구분을 규정하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생략) <u><신설></u> 2. ~ 10. (생략)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예술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자금의 용자</u> 2. ~ 10.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회계처리의 구분) 제18조제5호의2에 따른 용자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운용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u><신설></u> <u><신설></u>	제18조의2(회계처리의 구분) <u>다음 각 호</u> ----- ----- ----- -----. 1. 제18조제1호의2에 따른 용자금 2. 제18조제5호의2에 따른 용자금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2025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는 재정용자사업¹⁾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광산업 융자지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이 있었음.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예술분야 사업체 대상 저리의 융자 자금을 공급하여 예술산업 미래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예산을 편성하여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을 신규로 실시하게 되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용자사업 현황 >

사업	소관 기금	사업 내용	2026년도 예산액 ²⁾ (단위 :억원)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술분야 사업체 시설 설치 및 운전자금 융자	500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술인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융자	600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시설 확충 및 관광사 업자 운영에 대한 융자	8,440.6
스포츠산업금융 지원(융자)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용구생산업체, 체육시 설업체 등의 신규설치, 운 전자금 융자	2,416.4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재정용자사업은 국가가 조성한 공공자금을 재원으로 특정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특정대상에
게 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재정활동인 동시에 금융활동이라는 특징을 가짐.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결과 반영

그런데, 기존의 재정융자사업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관광산업 융자지원,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모두 각각 「문화예술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 규정³⁾을 두고 있음.

반면,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에 법적

3)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5의2.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0.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2조(대여 또는 보조사업) 법 제5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한 자나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종합여행업을 등록한 자나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관광협회를 포함한다)의 해외지사 설치
2. 관광사업체 운영의 활성화
3.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문화예술사업
4. 지방자치단체나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자 등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5.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문화·체육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의 조성
6. 관광 관련 국제기구의 설치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에 따른다.

1.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
2.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업
3.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기금의 용도와 지원대상을 구분하여 명문화한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의 조문 체계상 새로운 용자 대상 범주를 추가하려면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한다는 의견⁴⁾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술인 생활안정자금과 같이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도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예술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수준 높은 예술콘텐츠가 제공되어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확대되며, 관광 등 연관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용자’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로 별도 규정되어 있는 현행 조문 체계를 고려하여 예술산업에 대한 용자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 조달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용자금은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기금으로 회수 및 재투자되는 재원

4)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 p.177.

이며 다른 목적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가 필요한 예산이므로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84

□ 사업내용

- (사업목적) 예술 분야 사업체 대상 저리 융자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및 성장 지원
- (시행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14조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 (사업내용) 공연장·미술관 등 민간 예술시설업체와 예술작품 기획·제작·유통 등 서비스사업체 대상 시설·운전자금 융자 지원
- (추진방식)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 ('26년 예산) 500억 원(문예기금)
- (기준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26.3분기 3.80%)
* (중견기업 이상) 가산금리(+0.04%p), (중소기업) 우대금리(-0.21%p), (청년기업) 2.5% 고정금리
- (융자조건) 대상별·용도별 한도액,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상이

융자대상	분야	한도액	상환기간
민간 예술시설업체	시설자금	30억 원	4년 거치, 6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5억 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예술서비스업체	시설설치자금	10억 원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5억 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운영절차

